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. 10. 23 선고 2019가단372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10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
가. 별지 목록(1)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(2)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6,600,000원과 2018. 7. 8.부터 별지 목록(2)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200,000원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)

판사임혜원

별지